

공단 밀집지역 소재 사업장의 보건관리 위탁 가능 여부

 1993년 11월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공단 등 사업장 밀집지역이 제외되면서 2,0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사 및 보건관리자 3명 이상 채용으로 인한 경비의 부담 등 어려움이 있음

- 공단 밀집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종업원 2,000명 이상 사업장이 1995년 1월 1일부터 의사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였을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와 1995년 1월 1일 이후 종업원 3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만 선임되어도 무방하나 종업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대행기관에 위탁 하여도 합법한지 여부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의 위탁이 가능함

※ 참고사항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97.4.10)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사업장은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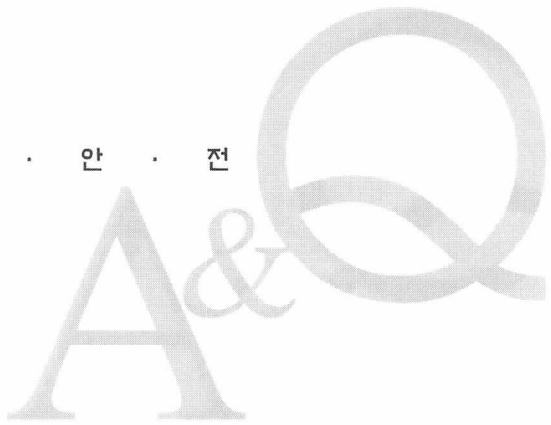
케이블크레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크레인인지 여부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레미콘)운반을 위한 케이블크레인(화물 삭도)에 작업인원이 로우프를 따라 이동하는 작업대(carriage)에 탑승하여 공사수행시 케이블크레인의 설비구분(삭도, 크레인의 구분), 케이블크레인이 삭도에 준하는 설비일 경우, 삭도·궤도법에 따른 적용범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크레인”이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후크 등의 달기구에 매달린 중량물을 동력으로 수직 권상하는 기능과 케이블을 이용하여 중량물 등을 수평운반하는 기능을 가진 케이블크레인도 동법에 의해 크레인의 하나로 분류됨.

※ 참고사항

삭도·궤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서도 건설공사용으로 일시적으로 가설한 삭도 및 궤도에 대해서는 동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가설화장실, 보안등 설치비 등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고시 제91-57호 별표2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주요내용, 사용예시 및 기준에 아래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여부

◎ 논의가 있는 항목

- 이동식 화장실(가설화장실) 설치비용 및 분뇨수거료
- 경비근무자 초소 설치비
- 식수비(상하수도료 및 광천수 구입비)
- 산재자체치료비(요양기간 4일미만 재해자 치료비)
- 구내보안등 설치비 및 전기료, 지하실 등 어두운 곳의 가설등 설치비 및 전기료
- 난방비

〈갑 설〉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항목을 말하는 것인 바 위 항목들은 특별히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계상된 것이라기 보다는 무관하게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제반시설의 설치 및 사용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볼 수 없음

〈을 설〉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일률적으로 판단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각 현장의 특성에 따라 사용형태는 다양한 것으로 예컨대 위 항목 중의 이동식화장실 설치비는 동 고시 별표2의 별도 계상비용에서 위생설비 비용으로 볼 수 있는 등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위 항목들은 전부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봄이 타당함.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N·F·B(배선용 차단기)의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커버나이프 스위치 대용으로 N·F·B(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여 전선의 합선, 규정용량보다 과전압의 흐름을 차단하여 화재예방 등을 할 수 있는 배선용 차단기의 구입 금액을 가설전기 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접지시설 등 항목에 의거 안전관리비에 포함 적용되는지



N·F·B(배선용 차단기)는 공사설계 내역서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고 근본 설치목적이 감전사고 등 근로자 채



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장치라기 보다는 전기설비 자체의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안전관리비 집행전에 발주처로부터 사전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여야 하는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시 제94-45호 ('94.10.21) 제2장 제10조(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중 및 공사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안전관리비 집행 전 발주처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하고 집행하여야 하는지

- 당현장은 발주처로 부터 신청(시공사) → 검토 (발주처) → 집행절차를 밟고 있는데 안전시설의 설치 및 수량 등을 제한 또는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받아 발주처의 허가된 사항만 집행하는데 시공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는 없고 발주처의 허가사항만 실시하는데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시공사에서 집행하고 발주처에서 요구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 목적외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감액 실시하면 되는 것인지



안전관리비의 사용중 공사종료후에 그 사용내역서를 발주자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감액조정 등을 위한 확인사항으로서 수급인이 집행전 발주자에게 사전하기를 득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안전관리비가 발주처에서 관리될 수 없음.

-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 감액조정하는 사항을 계약 특수 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여야 함.

※ 참고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표준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명칭 변경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99-11호 ('99.6.3)"으로 개정

주한외국공관 한국인 직원의 근로자 건강 진단실시 여부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가 적용되는지



국내 주재 외국대사관의 취업관련 규칙이나 당사국간의 협정 등에 한국인 직원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관련 법적



용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한 외국 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불가함.

난청검진결과 고음역내이성난청이 감각신경성난청으로 판정될 수 있는지 여부



(1) 난청검진결과 판정음이 고음역내이성난청이 감각신경성난청으로 판정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고령화에 따른 청력보정치 테이블(미국 OSHA, 일본자료) 적용여부 및 적용시킨다면 어느 단계에서 적용시켜야 하는지 여부

(2) 청력손실치 30dB이상이 골도검사 결과인지 기도검사 결과인지 여부 및 소음성 난청 판정기준과 보상기준의 차이점



(1) 의학적으로 난청은 고막과 중이에 원인이 있어 발생하는 전도성 난청, 청각신경의 수용체가 있는 내이와 청신경

및 청신경중추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그리고 이들이 함께 발생하는 복합성 난청으로 구분되므로 내이에 존재하는 청각신경의 고음역 수용체가 장애를 일으킨 고음역 내이성 난청은 의학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범주에 포함됨.

인간의 청력은 20세 전후를 정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난청의 판단에는 연령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청력보정치 표는 없는 실정으로 외국에서 개발된 자료만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집단적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개인의 특성에 의해 서로 달라지는 연령별 정상 청력감소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단지 검진의사가 소음에 대한 특수검진시 그 결과 판정에 참고하라고 제시된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검진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임.

(2) 소음성 난청이 속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반드시 기도 청력검사와 골도 청력검사가 함께 실시되어야 하며, 이 때 모든 음역대에서 두 청력검사간에 10dB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청력손실치 판정에는 반드시 기도청력검사치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함.

소음성 난청의 진행은 음역대별로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 대개 초기에 4,000Hz에 대한 청력손실을 우선으로 하여 회화음역대인 500, 1,000, 2,000Hz대의 청력감소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능장애의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장해가 될 수 있는 청력손실치를 더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1,000과 2,000Hz의 청력손실치를 2배 가중한 6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임





목재 가공용 등근톱 안전점검표

설비명(번호) _____

규격(용량) _____

설치장소 _____

소속부서 _____

점검항목	점검사항	양호	불량
동력전도부	1. 벨트, 풀리 등에 올, 덮개 등의 방호 조치가 되어 있는가?		
톱날 접촉 예방 장치	2. 고정 상태는 확실한가? 3. 설치상태가 양호하여 톱날에 신체가 접촉할 위험은 없는가?		
반발 방지장치 (분할 날)	4. 톱날과의 틈새는 12mm 이내인가? 5. 두께는 적당한가? (톱 두께의 1.1배 정도) 6. 톱날 후방의 2/3 이상을 덮고 있는가? 7.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가?		
톱날	8. 균열, 마모 등의 손상은 없는가? 9. 너트의 조임 상태는 양호한가? 10. 톱날의 회전은 균일한가?		
전기계통	11. 스위치 커버가 파손되지 않았는가? 12. 전선의 연결 상태가 양호한가? 13.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는가? 14. 배선의 피복에 손상된 부분은 없는가?		
작업	15. 공회전시 이상 소음, 진동의 발생은 없는가? 16. 톱날 교체시에는 충분히 시운전 한 후에 작업하는가?		
보호구	17.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마스크, 귀마개 등)		
※ 불량판정에 대한 조치 사항			

점검일시

년 월 일

부서

점검자